

보건의료행정학과 운영 규정

- 제정 : 2021. 2. 26.
- 개정 : 2021. 7. 30.
- 개정 : 2021. 12. 1.
- 개정 : 2022. 9. 1.
- 개정 : 2022. 12. 1.
- 개정 : 2024. 1.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보건의료행정학과(이하 “본 학과”)의 조직과 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의료행정학과 내규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과 운영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본교”) 학칙과 학사 내규에 준하여 하되, 보건행정학과 운영 시 특별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학과운영

제3조(학과장의 직무) ① 학과장의 임기는 총장이 임명한 기간으로 한다.

② 학과장은 학과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소집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③ 학과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과장은 소속 교원의 인사 및 대학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2. 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고, 학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3. - 식 제 -
4.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교원의 임무) ① 전임교원은 보건의료행정학과외의 학생지도, 교육, 연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분야의 봉사에 임한다.

②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생을 분담하며 지도학생의 대학생활, 학사, 학과적응, 취업, 진로에 관한 지도를 시행한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가진 전임교원은 프로그램 운영(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한다.

제5조(학과 교수회의) ①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논의하며, 구체적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2. 학과의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과정의 설정 및 개정
3.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검토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계획 수립
5. 학과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감독
6. 학생지도 및 장학생 선발, 학과운영의 기타사항 논의

② 구성은 전임교원 전체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겸임교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검토 시기는 장기는 매 5년마다 동계방학(5년 주기), 단기는 매년 동계방학(1년 주기)에 수행한다.

제6조(행정인력) 학과는 행정인력으로 행정조교를 두며, 임용, 역할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본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본 학과는 학과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 및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에 명시한다.

1. 교육과정위원회 :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으로 교과과정개발 전문가와 산업체 현장전문가를 둘 수 있다. 본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사회적 필요 및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과 교육목표 반영, 교수법 개선 및 교육 훈련,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및 개선, 기타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2. 평가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프로그램 책임자로 하며,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프로그램의 주기적 질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행·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이수, 전입 및 이수포기에 관한 사항 등을 실행한다.

3. 산학협력위원회 :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과 산업체 현장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수렴 및 반영, 현장실습 교육 및 취

업활동에 대한 산업체 의견수렴 및 반영,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산업체 의견수렴 및 반영,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준비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준비교육 자료 개발 등을 실행한다.

제 4 장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제8조(용어의 정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재)한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9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가진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은 제외한다.

② 프로그램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예산 수립 및 집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프로그램 인증의 총괄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
3. 인증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
4. 기타 인증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관리위원회) ①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프로그램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때에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2.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3. 프로그램의 주기적 질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행·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이수, 전입 및 이수포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1조(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 보건의료행정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

- 2. 보건의료행정학과로 전과하는 학생
- 3. 타 대학에서 본교 보건의료행정학과로 편입하는 학생

제12조(신청절차) ① 제11조 제1호의 보건의료행정학과 신입생은 입학 시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직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절차)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제12조에 따른 이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이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 대체 교과목(별표 1)에 대한 심의 및 동등성 인정절차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프로그램 이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프로그램 이수포기) ① 학생 본인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 비인증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년 최종학기 개시 전에 이수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이수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평가관리위원회에 이수포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수포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프로그램 최종성과) ①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설정한 인재상과 정평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최종성과(별표 2)를 설정한다.

②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수 안내서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③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은 프로그램 최종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제16조(이수체계 준수) ①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이수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표 3]의 프로그램 교과목 선·후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과, 편입, 휴학,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 지정된 선·후수 체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후수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③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4]의 필수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별표 5]의 특성화 학습영역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도 평가) ① 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2. 최종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기별로 운영된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3. 최종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최종성과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교육과정 개선계획을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인증심사) ① 프로그램 이수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성취도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충족여부 심사는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졸업요건) ① 학칙을 만족하고, 제16조 제3항에 의한 [별표 4]의 필수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별표 5]의 특성화 학습영역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제18조의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프로그램 이수요건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③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명칭에 보건전문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로 표기한 학위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20조(인센티브)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책임자 및 교수에게는 교수업적평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②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운영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책임자의 프로그램 운영
2. 교수의 프로그램 교과과정 참여
3.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와 관련된 평가위원 참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및 출제 참여

제 5 장 현장실습

제21조(실습운영) ① 현장실습의 운영은 산학협력위원회가 주관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두어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현장실습 책임자는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며, 산학협력위원장이 학과장을 책임자로 한다.

③ 현장실습 주요 일정은 [별표 6]의 현장실습 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제22조(현장실습기관) ① 현장실습기관은 시설 및 규모를 참작하여 전공분야 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㉔ 현장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 중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로서 해당 학과의 교과목과 연계된 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법에 부합하는 기관
4. 그 밖의 전공분야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제23조(현장실습 계약)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㉕ 현장실습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
2.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 안전조치
3. 실습생에 대한 실습비 지원 등 수혜조건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㉖ 산학협동협약이 체결되어 별도 협약이 필요 없는 업체는 현장실습 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학생배정) ① 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은 시설 및 규모, 실습할 부서 특성 및 학생의 거주지, 학생의 희망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분야 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㉗ 실습학생 배정 시 학생의 거주지 및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시설 및 규모별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은 1~3명 배정한다.
2. 병원급 의료기관은 1~5명 배정한다.
3.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10명 배정한다.
4.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명 이상 배정한다.
5. 그 밖의 전공분야 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1명 이상 배정한다.

제25조(실습시기 및 기간) ① 현장실습은 졸업 전 학년도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㉘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3주(120시간)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사전교육) ① 현장실습 일정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실습기관에 파견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실습 관련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㉙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의 목적 및 실습기관 현황
2. 현장실습일지 작성 및 평가방법

3. 실습직종 직무기술서
4. 의사소통 및 태도
5. 직업환경 및 직무수행 상황에서의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6. 성희롱 예방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8. 개인정보보호법
9. 현장실습 시 유의사항 등

제27조(순회지도) ① 현장실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과에서는 전임교원이 순회 지도하도록 한다.

- ② 학과에 속한 전임교원에 순회지도 실습기관을 배정하며, 전임교원은 실습기간에 배정된 실습기관을 1회 이상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임교원은 실습기관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④ 전임교원은 순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학과에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한다.

제28조(실습평가) ①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된 학생의 현장실습일지, 실습기관의 현장실습평가서, 현장실습 만족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의 성적은 총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③ 학과는 학생 및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실습대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현장실습기관에서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실습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의 사유로 실습 운영이 제한될 경우
2. 실습기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개인의 사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습이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30조(실습생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과에서 제공한 현장실습 지침서를 참조하여 실습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해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안전사고 또는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은 수업의 연장이므로 학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장은 예의 있고 단정하게 한다.

제31조(실습일지 작성)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지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습종료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② 현장실습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2조(기타)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학 번					성명				
구 분 (해당사항에 0표)	신입학	전과	편입학	기타					

본인은 수원과학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운영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원과학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학위증서(한글)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 과 :
학 위 명 :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우 창 훈

학위등록번호 : 수원 - -

SUWON SCIENCE COLLEGE DIPLOMA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ivion :

Degree Name : Associate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required
and is hereby awarded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from Suwon Science College.

President of the 

Suwon Science College **Chang Hoon Woo**

Registration Number : SSC - -

별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동등성 인정 교과목

현행(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		법 개정 전(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의료보험
2	건강정보보호	-
3	병리학	병리학개론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의료정보관리학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무기록학
7	보건의료조직관리	-
8	보건의료통계	병원통계
9	암등록	암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의료관계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적절진료보장
12	의료정보기술	전산학
13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의무기록실습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
15	의학용어	의학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질병 및 수술분류
17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18	현장실습	-
	-	의무기록전사
	-	공중보건학개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전산학'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한 보건의료DB, 보건의료DB실습, 데이터베이스, 의료데이터베이스론은 현행 교과목 '의료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관리'의 동등성 인정 교과목으로 인정함

별표 2. 프로그램 최종성과

보건의료행정학과 프로그램 최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P01. 보건의료정보관리 기초지식 및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에 적용한다.◦ P02. 데이터품질관리(DQM)를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 및 의 룡행위 분류코드를 적용한다.◦ P03. 보건의료 데이터 및 정보를 다양한 정보 이용 목적에 맞춰 변환 및 분 석한다.◦ P04. 보건의료정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고 관련 요소의 변화 를 조직의 보건의료정보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 관리한다.◦ P05. 양질의 정보 생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표준과 관련 정보기술을 정보시 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P06. 보건의료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 통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P07. 조직 및 팀 내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P08.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임무와 윤리, 사회적 책임을 이해한다.◦ P09. 보건의료정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이해 한다.◦ P010. 보건의료 및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진로 개발 및 자기개발에 참 여한다.

별표 3. 프로그램 교과목 선·후수 체계

선수 교과목명			필수	후수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1	1	해부생리학	→	2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2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1)
				2	2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2)
				2	2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
				2	2	암등록
				3	1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1)
				3	2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2)
				3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CDI)
1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3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1	2	병리학	→	2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2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1)
				2	2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2)
				2	2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
				2	2	암등록
				3	1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1)
				3	2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2)
				3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CDI)
1	2	의학용어(1)	→	2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2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1)
				2	2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2)
				2	2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
				2	2	암등록
				3	1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1)
				3	2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2)
				3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CDI)
2	1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	3	2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CDI)

5-0-30 보건의료행정학과 운영 규정

별표 4.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보건의료정보관련 과목

법정 교과목	실습 과목 여부	개설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이론	실습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	3	0	1-1
2.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실습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0	2	3-2
3. 보건의료조직 관리		보건의료조직관리	2	0	3-1
4. 건강정보보호		건강정보보호	2	0	3-1
5.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실습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2)	0	4	2-1, 2-2
6.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실습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1), (2)	0	4	3-1, 3-2
7.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실습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CDI)	0	3	3-2
8. 암 등록	실습	암등록	0	2	2-2
9. 의료의 질 관리		의료의 질 관리	3	0	2-2
10.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실습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1), (2)	2	2	2-1, 2-2
11. 보건의료 통계	실습	캡스톤디자인 보건의료통계	0	3	3-1
12.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실습	보건의료데이터관리	0	3	2-1
13. 의료정보기술		의료정보기술	3	0	3-1
14. 의료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	2	0	2-2
15. 의학용어		의학용어(1), (2)	6	0	1-2, 2-1
16. 병리학		병리학	3	0	1-2
17.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3	0	1-1
18. 현장 실습	실습	현장실습	0	3	3-2
총 계			29	26	

별표 5.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특성화 학습 영역	개설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이론	실습	
보건의료관리	1. 공중보건학개론	3	0	1-1
	2. 병원재무관리	2	0	1-1
	3. 원무관리	0	3	1-2
	4. 보건사업관리	3	0	1-2
	5. 보건교육학	2	0	2-1
	6. 병원코디네이터	3	0	2-2
	7. 보건행정학	3	0	3-2
총 계		16	3	

별표 6. 현장실습 일정계획

현장실습 주요 내용	일정
현장실습기관 섭외 및 협약 체결	현장실습 실시 2주 전까지
현장실습 내용 협의 및 계획 수립	현장실습 실시 1주 전까지
현장실습 특강 및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 실시 1주 전까지
현장실습 학생선발 및 배정	현장실습 실시 1주 전까지
현장실습기간	하계 및 동계방학 중
현장실습 방문지도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현장실습 종료 후 한달 이내